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43

발의연월일: 2023. 8. 9.

발 의 자: 민형배 · 윤후덕 · 서동용

이용선 · 양정숙 · 이정문

박홍근 • 유기홍 • 황운하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체험학습 이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받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규정 정비해 법 해석 혼란을 방

지하고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3호).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린이의 통학 등"을 "어린이의 통학 등(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한 이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23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u>어린이의 통학</u>	<u></u> 어린이의 통학
<u>등</u> 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	등(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한 이동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u>을 포함한다)</u>
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	
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	
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	
한다.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24. ~ 33. (생 략)	24. ~ 33. (현행과 같음)